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 1218호

2015년 2월 13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고 제2015- 275호 지방세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2
- 공고 제2015- 28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입법예고
- 공고 제2015- 29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12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동구보건소 20
공고 제2015- 14호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작권말소 예정 공고

고 시

- 고시 제2015- 19호 통·반구역 조정 결정 고시 21
- 고시 제2015- 22호 도시관리계획(소래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26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 제2015- 23호 도시관리계획(서창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28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 제2015- 24호 도시관리시설(주차장 : 서창 제7주차장) 사업 사업시행자 30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홍보미디어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5-275호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제공일자 : 2015. 2. 9.
- 제공받은 자 : 아진전산(주)
- 제공목적 : 자동차세 2월 수시분 및 독촉장(2014년 12월분) 인쇄
- 법적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 제18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지방세 납세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과세대상물건, 세액, 가상계좌번호, 전자납부번호, 과세번호
- 제공받은 정보 보유기간 : 지방세 고지서 출력 완료시까지
- 공고기간 : 2015. 2. 9. ~ 2015. 2. 24. (15일간)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2015년 2월 9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28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2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개정이유

- 구세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감면규정을 정비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한편,
- 관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인용조문 정비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2018년까지 연장하되, 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 조정(안 제2조)
 - “100분의 100”에서 2016년12월31일까지 “100분의 75”,
2017년1월1일부터 2018년12월31일까지 “100분의 50”
-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정비(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 감면 적용시한을 2017년12월31일까지 연장(부칙 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무1과(전화 : 032-453-2360 FAX : 032-453-23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100분의 10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3조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9조 중 “법 제96조”를 “법 제180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47조제1항”을 “제126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 후단 중 “등에 관하여는 영 제48조”를 “등은 영 제127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후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종전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2011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를 말한다) 제6조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u>대하여는</u>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감면하는율은 <u>100분의 100</u> 으로 한다.	제2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 ----- ----- ----- <u>대해서는</u> ----- ----- ----- ----- ----- <u>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u> -----.
제3조(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면제)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u>대하여는</u>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3조(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면제) -- ----- ----- ----- ----- <u>대해서는</u> ----- ----- -----.
제4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u>대하여는</u>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5제3항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정한다. 1. ~ 4. (생략)	제4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 ----- <u>대해서는</u>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9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u>법 제96조</u> 를 적용한다.	제9조(중복감면의 배제)----- ----- ----- ----- ----- <u>법 제180조</u> -----.
제10조(감면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u>제47조제1항</u> 각 호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0조(감면 신청) ①----- ----- ----- ----- <u>제126조제1항</u>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u>등에 관하여는 영 제48조</u> 를 준용한다.	제11조(감면자료의 제출) ----- ----- ----- ----- ----- ----- <u>등은 영 제127조</u> ----- -----.

〈 관계법령 발췌사항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4.3.24.>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 ⑧ (생략)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략)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신설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31.>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가. 특별시·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나. 가목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⑤ (생략)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

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감면 신청) ① 법 제18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2013.3.23., 2014.3.14., 2014.8.20., 2014.11.19.>

1. ~ 6. (생략)

② ~ ③ (생략)

제127조(감면자료의 제출) 법 제184조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감면대상 및 감면받은 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4., 2014.11.19.> [제48조에서 이동 <2014.3.14.>]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29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2. 1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제안이유

법령의 개정 및 구 조직개편 등 여건 및 환경의 변화에 따라 현실과 상이한 조항 등을 개정함으로서 안전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의 구성에 따라 위원회 기능 현실화함
-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및 위촉직위원의 구성 인원을 구체화함
- 위원회 위원 중 축제 및 행사의 심의기능을 강화를 위한 관련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함
- 위원회 위원의 포괄적 해촉요건을 구체화함
- 상위법령(재난 및 안전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위원 등을 명시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안전총괄실, 전화: 032-453-2310)에게 제출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310, FAX 453-231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사항
 라. 제출서식

제 정 (안)	사 유 (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4. 개정조례안(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5년 2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법령의 개정 및 구 조직개편 등 여건 및 환경의 변화에 따라 현실과 상이한 조항 등을 개정함으로써 안전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의 구성에 따라 위원회 기능 현실화함
-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및 위촉직위원의 구성 인원을 구체화함
- 위원회 위원 중 축제 및 행사의 심의기능을 강화를 위한 관련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함
- 위원회 위원의 포괄적 해촉요건을 구체화함
- 상위법령(재난 및 안전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위원 등을 명시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지역위원회)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인천광역시를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4.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당연직 위원
 - 가. 부구청장
 - 나. 재난관리업무담당 부서장
 - 다. 문화예술 및 공연업무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가. 유관기관의 위원

구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소방서의 장, 경찰서의 장, 교육장, 군 부대의 대대장급 이상의 지역사령관 등으로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나. 민간위원

재난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 위원회 및 제8조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시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장기불참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재난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 회의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조정
2.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의 조정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9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 및 행사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 제11조에 의한 재해대처계획 포함한다. 이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으로 한다)의 심의
4.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재난관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③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예술 및 공연업무담당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이 된다.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⑥ 실무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⑦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주관부서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고,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⑧ 실무위원장은 민간기관·단체에서 축제·행사 주최자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할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전문지식의 활용)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의뢰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및 기관·단체가 자료의 제출 및 의견제시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통보 및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 이외의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기타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 공고 제 2015-14호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내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5. 02. 24.
3. 처 분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15. 02. 13. ~ 2015. 02. 23. (11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연 번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말소예정일)
1	일반 음식점	2005 0199228	천하통일 독도참치	최*규	담방로 36 (만수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4.12.31.	2015.02.24.

6. 고 지 사 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15. 02. 23.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재결청(인천광역시장)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관할법원에 행정소송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 (032)453-2626

2015. 02. 1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 2015-19 호

통·반 구역조정 결정고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구역 조정내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 다 음 -

○ 시 행 일 자 : 2015. 2. 17.부터 시행

○ 통·반 구역 조정 내역 : “ 첨 부 ”

2015. 2. 6.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통·반 구역 조정 세부내역

[장수서창동]

통·반 구역 조정현황

구 분	조정전		증감		조정후		비 고
	통	반	통	반	통	반	
남동구	636	3,602	6	27	642	3,629	
장수서창동	38	197	6	27	44	224	

통·반 구역 조정사유 및 내역

기존	조 정 사 유	조정결과									
27통	○ 일반주택 입주에 따른 반 증설 ○ 변경내역 : 6개통 26개반 신설 <table><tr><th>변 경 전</th><th>변 경 후</th></tr><tr><td>27통 7반</td><td>27통 8반</td></tr></table>	변 경 전	변 경 후	27통 7반	27통 8반	1개반 ↑					
변 경 전	변 경 후										
27통 7반	27통 8반										
신설	○ 2015년 2월말 서창2지구 1블록 아파트 신규입주에 따른 통·반 신설 ○ 변경내역 : 6개통 26개반 신설 <table><tr><th>변 경 전</th><th>변 경 후</th></tr><tr><td rowspan="6">신 설</td><td>39통 6반 (신설)</td></tr><tr><td>40통 4반 (신설)</td></tr><tr><td>41통 4반 (신설)</td></tr><tr><td>42통 4반 (신설)</td></tr><tr><td>43통 4반 (신설)</td></tr><tr><td>44통 4반 (신설)</td></tr></table>	변 경 전	변 경 후	신 설	39통 6반 (신설)	40통 4반 (신설)	41통 4반 (신설)	42통 4반 (신설)	43통 4반 (신설)	44통 4반 (신설)	6개통 ↑ 26개반 ↑
변 경 전	변 경 후										
신 설	39통 6반 (신설)										
	40통 4반 (신설)										
	41통 4반 (신설)										
	42통 4반 (신설)										
	43통 4반 (신설)										
	44통 4반 (신설)										

통 · 반 조정 세부내역

장수서창동 통 · 반구역 조정 세부내역

현행				조정후				비고
통	반	관할구역	세대수	통	반	관할구역	세대수	
	소 계				소 계		29	일반주택입주(반 증설)
		증 설			8	서창방산로 158번길 15-8 서창방산로 158번길 7-10 서창방산로 158번길 25-8 서창남로 16-20 서창방산로 158번길 7-14 서창방산로 158번길 7-8 서창남로 16-26 서창남순환로215번길 20 서창남순환로62번길 26-3 서창방산로 158번길 7-2	29	
	소 계				소 계		440	신규입주통반신설
		신 설			1	서창동 1블록 서창2 휴먼시아 101동 1 ~ 4호	72	
		신 설			2	서창동 1블록 서창2 휴먼시아 101동 5 ~ 8호	72	
		신 설			3	서창동 1블록 서창2 휴먼시아 102동 1호 ~ 4호	72	
		신 설			4	서창동 1블록 서창2 휴먼시아 102동 5 ~ 8호	72	
		신 설			5	서창동 1블록 서창2 휴먼시아 103동 1 ~ 4호	76	
		신 설			6	서창동 1블록 서창2 휴먼시아 103동 5 ~ 8호	76	
	소 계				소 계		352	신규입주통반신설
		신 설			1	서창동 1블록 서창2 휴먼시아 104동	88	
		신 설			2	서창동 1블록 서창2 휴먼시아 105동	88	
		신 설			3	서창동 1블록 서창2 휴먼시아 106동	88	
		신 설			4	서창동 1블록 서창2 휴먼시아 107동	88	

현행				조정후				비고
통	반	관할구역	세대수	통	반	관할구역	세대수	
	소 계			41	소 계		404	신규 입주 통반 신설
		신 설			1	서창동 1블록 서창2 휴먼시아 108동	88	
		신 설			2	서창동 1블록 서창2 휴먼시아 109동	122	
		신 설			3	서창동 1블록 서창2 휴먼시아 110동 1 ~ 4호	80	
		신 설			4	서창동 1블록 서창2 휴먼시아 110동 5 ~ 10호	114	
	소 계			42	소 계		333	신규 입주 통반 신설
		신 설			1	서창동 1블록 서창2 휴먼시아 111동 1 ~ 4호	80	
		신 설			2	서창동 1블록 서창2 휴먼시아 111동 5 ~ 8호	78	
		신 설			3	서창동 1블록 서창2 휴먼시아 112동 1호 ~ 3호	75	
		신 설			4	서창동 1블록 서창2 휴먼시아 112동, 4호 ~ 7호	100	
	소 계			43	소 계		349	신규 입주 통반 신설
		신 설			1	서창동 1블록 서창2 휴먼시아 113동 1호 ~ 4호	86	
		신 설			2	서창동 1블록 서창2 휴먼시아 113동 4호 ~ 8호	88	
		신 설			3	서창동 1블록 서창2 휴먼시아 114동 1 ~ 3호	75	
		신 설			4	서창동 1블록 서창2 휴먼시아 114동 4호 ~ 7호	100	
	소 계			44	소 계		308	신규 입주 통반 신설
		신 설			1	서창동 1블록 서창2 휴먼시아 115동 1호 ~ 4호	78	
		신 설			2	서창동 1블록 서창2 휴먼시아 115동 5호 ~ 8호	72	
		신 설			3	서창동 1블록 서창2 휴먼시아 116동 1호 ~ 4호	80	
		신 설			4	서창동 1블록 서창2 휴먼시아 116동 5호 ~ 8호	78	

통 · 반 구역 조정 현황

▷ 승인일자: 2015.2.17

구분 동명	현행		증감		조정후		비 고
	통	반	통	반	통	반	
계	636	3,602	6	27	642	3,629	
구월1동	36	197	0	0	36	197	
구월2동	41	222	0	0	41	222	
구월3동	25	137	0	0	25	137	
구월4동	31	171	0	0	31	171	
간석1동	38	214	0	0	38	214	
간석2동	20	139	0	0	20	139	
간석3동	47	245	0	0	47	245	
간석4동	39	213	0	0	39	213	
만수1동	35	171	0	0	35	171	
만수2동	33	177	0	0	33	177	
만수3동	23	132	0	0	23	132	
만수4동	32	198	0	0	32	198	
만수5동	28	184	0	0	28	184	
만수6동	33	185	0	0	33	185	
장수서창동	38	197	6	27	44	224	
남촌도림동	34	193	0	0	34	193	
논현1동	39	241	0	0	39	241	
논현2동	33	210	0	0	33	210	
논현고잔동	31	176	0	0	31	176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5-22호

도시관리계획(소래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소래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032-453-298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 2. 1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결정취지 : 도시관리계획(소래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위 치 : 남동구 논현동 111-10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 변경있음
1)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소래4	8	국지 도로	112	소1-3	소1-4	일반 도로	11.9.14	인고 2011-225호
변경	소로	2	소래4	8	국지 도로	112	소1-3	소1-4	일반 도로	11.9.14	면적변경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4 (소래)	소로2-4 (소래)	· 도로 면적 변경 : 증)1.0m ²	· 도시계획선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정정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있음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계획

○ 주거용지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 구(BLock)			획 지(Lot)					비 고
가구번 호	면적(m²)		위 치			면적(m²)		
	기정	변경	구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주4BL	3,949	3,948	1	109-107답	109-107답	25	25	■ 공동개발 지정 ※ 도시계획선(도로) 분할에 따른 지번 및 지적변경
				109-141대	109-235대	327	326	
				109-172답	109-172답	48	48	
				소계		400	399	
			2	109-144대	109-144대	417	417	■ 공동개발 지정
				109-180대	109-180대	20	20	
				소계		437	437	
			3	109-145대	109-145대	433	433	
			4	109-146대	109-146대	547	547	
			5	109-142답	109-142답	31	31	■ 공동개발 지정
				109-146대	109-146대	41	41	
				109-147대	109-147대	644	644	
소계		716		716	※ 필지수 : 3개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주거용지	주4	-가구 및 획지면적 변경 · 위치 : 남동구 논현동 109-107답 일원 · 가구면적 : 3,949m ² →3,948m ²	· 도시계획선 분할측량에 따른 획지 면적 정정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계획 : 변경없음

3) 건축물에 대한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계획 : 변경없음

4) 기타사항에 대한 계획 : 변경없음

5) 특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5. 관계도서 : 도면게재 생략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5 - 23호

도시관리계획(서창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서창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015. 2. 13.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I.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서창구역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사항임.

II.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1. 서창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변경 없음

II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 지구 결정 조서 : 변경 없음

2. 도시계획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

가. 도 로 : 변 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7	8	국지 도로	814	중3-69	소1-7	일반 도로	-	인고 제1998-113 (1998.06.08)	
변경	소로	2	17	8~14	국지 도로	814	중3-69	소1-7	일반 도로	-	"	

※ 변경 사항만 표시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2-17	소2-17	도로폭원 당초 8m → 변경 8~14m	경관녹지 일부를 도로로 변경하여 도로 폭원 변경

나. 녹지 : 변경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녹 지	경관 녹지	서창동 614-1 일원	1,846.2	감)53.6	1,792.6	인고98-113 (1998.6.8)	

※ 변경 사항만 표시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서창5녹지	-면적감소 : 53.6㎡	- 경관녹지 일부를 도로로 변경 사업지 내·외 도로 연결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 없음

4. 건축물 용도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 변경 없음

5. 건축물의 용도, 형태, 배치, 기타사항, 도시계획도로, 단지내 시설물 배치 등에 관한 계획 : : 변경 없음

6.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IV. 관계도서 : 불 임(게재생략)

1. 서창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총괄도(S=1:2,000)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5 - 24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서창 제7주차장】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서창 제7주차장】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4) 및 건축과(☎453-277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5. 2. 13.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31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서창 제7주차장)
- 명 칭 : 서창 제7주차장 공사

3. 사업의 규모

- 토지면적 1,949.0㎡, 연면적 7627.95㎡, 건폐율 1,549.40㎡, 주차장 107대
- 세부 연면적(단위:㎡)

	합 계	1층	2층	3층	4층	5층
주차면적	5,400.29	575.86	739.92	1,498.68	1,498.68	1,087.15
근생면적	1,752.86	753.66	707.92	-	-	291.28
공용면적	474.80	153.21	101.56	28.36	28.36	163.31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이경화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30번길 32, 203동 1005호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
- 준공예정일 : 2015. 10.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지목	공부상면 적 (㎡)	편입면 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성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31번지	주차장	1,949.0	1,949.0	이경화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30번길 32, 203동 1005호	해당 없음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